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정키로

노동부, 화학공장 안전점검도 실시

노 91. 5. 24

노동부는 20일 각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을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백인 이상 8천 3백80개 사업장과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취업규칙을 심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지시한 뒤 2회 이상 불응한 사업주는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이번에 심사내용으로 하는 것은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임금차별·호봉승급과 제수당 차별 지급 ▲교육·배치 및 승진차별 ▲정년·퇴직 및 해고의 차별 ▲육아휴직제 실시여부 등으로 각각 고평법 6조 7조 8조 11조 14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91.
5.1

인재은행 '90년 취업알선 현황'

지난해 1년 동안 인력 수요의 학력간·직종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영자총협회 부설 인재은행의 90년도 취업알선 현황에 따르면 구직자 수에 대한

반면 전문직은 0.86에 그쳤다.

한편 여성취업실태를 보면 31살 이상의 여성에 대한 구인은 거의 없었고, 취업이 이뤄진 여성의 대부분이 월35만원 이하의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채

대졸 구직 고졸보다 3배 힘들어

취직여성 대부분 월급 35만원 못미쳐

구인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구인배율이 고졸자 2.95, 전문대 졸업자 1.78로 높았으나 대졸 이상자는 0.97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과 기술직이 각각 1.57과 1.92로 나타나 기술직의 구인난이 컸던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4.6%에서 33.5%로 줄어 들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줬다.